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개 선 · 시 정 요 구

제 목 경력경쟁 특별채용자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채용은 매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오고 있고,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 채용, 특별채용의 방법 등을 통하여 채용하여 오고 있으며, 이렇게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소방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 시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1. 경력경쟁 채용자 보직관리 업무 부적정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제2항 및 제4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sup>1)</sup> 등), 규정에 근거하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채용 자격

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이렇게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채용목적, 보유자격증, 소방 수요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sup>2)</sup>) 제4항,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규정<sup>3)</sup> 등에 따라 채용분야별 전보 제한기준, 보직관리원칙 등을 준수하여 인사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 현장 구급대원 등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경력경쟁 채용방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6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표1]과 같이 채용하였다.

[표1] 2013년 ~ 2017년 경력경쟁 채용 현황

연도 \ 분야	계	소방 (사시특채)	구급	구조	운전	차량 정비	통신	항공	화학 분석
총계	106	1	53	33	4	7	1	2	5
2013년	2		1					1	
2014년	5	1	1	2		1			
2015년	30		15	13		2			
2016년	47		21	12	3	4	1	1	5
2017년	22		15	6	1				

※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와 같이 경력경쟁 방법으로 채용한 106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시행하면서 ○○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차량정비 분야로 채용한 지방○○○ ○○○ 등 8명을 당초 채용계획과 다른 운전보직 등으로 전보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4항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제3항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사법시험 합격자) 및 3년(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보직관리의원칙)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2] 2013년 ~ 2017년 경력경쟁 채용자 부적정 배치현황

번호	계급	성명	채용분야	최초 임용	최초보직	현부서	현직무
1	지방○○○	○○○	차량정비	2014-12-15	운전	2014-12-15	운전
2	지방○○○	○○○	구조	2015-11-02	진압	2018-01-10	화재진압
3	지방○○○	○○○	구급	2016-01-04	구급	2017-07-05	구조
4	지방○○○	○○○	구조	2016-01-04	진압	2016-11-21	화재진압
5	지방○○○	○○○	차량정비	2016-01-04	진압	2016-11-21	화재진압
6	지방○○○	○○○	화학분석	2016-11-21	화학분석	2017-11-06	구조
7	지방○○○	○○○	통신	2016-11-21	통신	2016-11-21	운 전
8	지방○○○	○○○	구조	2016-11-21	진압	2018-01-05	화재진압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울산○○본부에서는 소방차량 정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력경쟁 채용방법으로 자동차 정비 분야 7명을 채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비 분야에 대한 직제를 승인받지 못해 정비 분야 채용인력 7명을 [표3]과 같이 중부소방서 등 4개 소방서로 각각 분산 배치하여 각 소방서의 직할 안전센터 또는 일반 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있으며, 차량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명도 정비실(정비차량)이 없이 인원만 배치된 채 차량정비 보다는 화재진압, 운전업무 등을 주업무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2014년 ~ 2016년 차량정비 분야 채용자 배치현황

번호	관서	계급	성명	채용분야	최초 임용	최초 보직	현부서	현 직무
1	○○소방서	지방○○○	○○○	자동차정비	14.12.15	○○119안전센터 운전업무	14.12.15	운전
2	○○소방서	지방○○○	○○○	자동차정비	15.04.27	○○센터 차량정비업무	15.04.27	차량정비
3	○○소방서	지방○○○	○○○	자동차정비	15.04.27	○○119안전센터 운전업무	16.11.21	운전
4	○○소방서	지방○○○	○○○	자동차정비	16.01.04	○○센터 화재진압업무	16.11.21	화재진압
5	○○소방서	지방○○○	○○○	자동차정비	16.08.01	○○소방서 자동차정비	16.08.01	차량정비
6	○○소방서	지방○○○	○○○	자동차정비	16.08.01	○○119안전센터 운전업무	16.08.01	차량정비
7	○○소방서	지방○○○	○○○	자동차정비	16.11.21	○○119안전센터 운전업무	16.11.21	차량정비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울산소방의 법률상담, 소송대응 등 업무를 위해 2014.02.24. 4호 특채(사법시험합격자)로 채용한 ○○○ ○○○는 전보제한 기간인 2년이 경과하자 법률상담, 소송 등과 관련이 없는 ○○소방서 ○○○○팀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울산○○본부의 소송 등 사무는 전문자격자 없이 소송 건별로 해당 부서에서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력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 2. 구조(항공구조)대원 자격 미달자 배치운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요구구조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sup>4)</sup> 및 제17조(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sup>5)</sup> 규정 기준에 따라 구조대원으로서 자격기준을

4) 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5) 구조대원,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

갖춘 사람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본부에서는 각 구조(항공)·구급대 인력배치 시 경력경쟁 채용자 및 유자격자를 배치 운영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2017년 말 기준 구조대원 총 인원 67명 중 구조대원 자격 미달자가 16명, 인명구조사 미취득자(자격 미달자 포함)가 31명(46.2%)에 달하는 것으로 [표4]와 같이 확인되어 위급한 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갖춘 구조대원의 배치에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표4] 2017년 구조(항공구조)대 자격 미달자 현황

구분	동부	남부	중부	온산	항공대
구조대원 총 67명	15명	15명	18명	13명	6명
소계 31명	5명	8명	9명	5명	4명
자격 미달자 (소방사)	3명	4명	6명	1명	2명 (항공 구조교육 미수료)
인명구조사 자격 미취득자	2명	4명	3명	4명	2명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3. 징계 처분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효력) 규정에 따라 보수의 감액, 신분의 제한, 일정기간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있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에 의거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의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거 소속기관 지방소방청 이하에 대하여 연 2회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소속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 중 38명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처분 이후 15명이 성과상여금 “B등급” 이상, 18명이 근무성적평정 “우” 이상을 받았으며, 이중 지방○○○ ○○○는 성과상여금 “A등급”을 받았고, 지방○○○ ○○○, 지방○○○ ○○○ 등 2명은 근무성적평가 “수”를 받은 것으로 [붙임]과 같이 확인되는 등 성과상여금 및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징계 처분자 보수 감액지급 부적정(동부소방서)

「소방공무원법」 제23조(징계위원회)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시·도 및 소방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70조(징계의 종류), 제71조(징계의 효력)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고, 징계 처분의 종류에 따라 보수, 수당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소방서 징계위원회에서는 2016.4.7. 22:00경 혈중 알콜농도 0.074%의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방○○○ ○○○에 대한 징계를 2016.6.15. 의결하면서 지방○○○ ○○○가 2012.6.1.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하자 징계양정에 따라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6)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일부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간 보수(수당포함 2/3)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일인 6.15. 전까지인 6.1.부터 6.14.까지는 정상지급 하고, 처분기간인 6.15.부터 9.14.까지는 보수의 2/3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정상근무기간인 9.15.부터 9.30까지는 16일분에 대한 봉급을 정상 지급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9월분 봉급이 1,910,420원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표5]와 같이 1,479,040원만을 지급하여 431,387원을 미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표5] 징계처분(정직 3월) 기간 중 봉급 지급현황

6)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행 2016.1.1.] [행정자치부예규 제42호, 2016.1.27. 일부개정]

4. 봉급의 감액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5조)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의 2/3를 감함
- 정직 : 보수의 2/3를 감함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함

\* 단,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계구		월 지급액	일수 (월)	지급 일수	지급분	지급금액	비고
예	6.1.~6.14.(14일) 정상지급	2,773,200	/ 30	x 14		1,294,160	
	6.1.~6.14.(14일) 정상지급	2,773,200	/ 30	x 16	x 1/3	493,013	
						1,787,170	
	7월분 1/3지급	2,773,200	x 1/3			924,400	
	8월분 1/3지급	2,773,200	x 1/3			924,400	
	9.1.~9.14.(14일) 1/3지급	2,773,200	/ 30	x 14	x 1/3	431,387	미지급
	9.15.~9.30.(16일) 정상지급	2,773,200	/ 30	x 16		1,479,040	9월 지급액
	<b>* 9월분 실제 지급액 : 1,479,040</b>						1,910,420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개선] ① 특별채용된 자를 당초 채용 목적에 맞게 보직관리하시고, 구조(항공) 대원 자격 미달자에 대해 자격취득 및 유자격자 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징계(주의·경고·훈계)처분 등 대상자에 대한 성과급심사, 근무성적 평정 시 관련규정과 직무성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징계처분대상자(지방○○○ ○○○)의 2016.9월분 본봉 중 미지급된 431,380원(원단위 절하)을 지급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징계처분 대상자 근무성적 및 성과등급 평가 현황

번호	계급	성명	비위사실	집행 일자	징계 양정	근무 평정	근평 등급	성과 등급
1	지방○○○	○○○	배우자 상해, 폭행 및 협박	140226	견책	37.5	양	B
2	지방○○○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신분은폐)	140418	견책	41.75	우	B
3	지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신분은폐)	140418	견책	34.25	양	B
4	지방○○○	○○○	음주운전 교통사고	140523	감봉1월	32.5	양	B
5	지방○○○	○○○	음주운전	140618	견책	44.25	우	A
6	지방○○○	○○○	산지관리법 위반	140718	불문경고	35.5	양	B
7	지방○○○	○○○	명예훼손	140901	견책	44.25	우	B
8	지방○○○	○○○	직장이탈금지 위반(무단결근)	140912	견책	45.75	우	B
9	지방○○○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41219	견책	37.75	양	B
10	지방○○○	○○○	품위유지의무 위반	150129	견책	35.5	양	B
11	지방○○○	○○○	부하직원 3명 폭행	150604	감봉1월	37.75	양	B
12	지방○○○	○○○	상해	150824	불문경고	35.5	양	B
13	지방○○○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50902	감봉1월	37	양	미지급
14	지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50915	감봉1월	44.5	우	미지급
15	지방○○○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50924	감봉1월	45	우	미지급
16	지방○○○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51211	견책	47	수	미지급
17	지방○○○	○○○	국유재산법 위반	160119	불문경고	43	우	B
18	지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60607	견책	41.25	우	미지급
19	지방○○○	○○○	구급차량 교통사고	160615	견책	41.25	우	B
20	지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60615	정직3월	39	우	미지급
21	지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60906	견책	퇴직	*	퇴직
22	지방○○○	○○○	폭행	160922	불문경고	41.25	양	B
23	지방○○○	○○○	도박	161118	견책	41.75	양	미지급
24	지방○○○	○○○	유사 성행위	161212	강등	41.75	양	미지급
25	지방○○○	○○○	강제추행	170124	정직1월	58.5	수	미도래
26	지방○○○	○○○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 교통사고	170217	견책	42	양	미도래
27	지방○○○	○○○	무인파괴방수탐차 계약관련 업무태만	170227	불문경고	40.25	양	미도래
28	지방○○○	○○○	공무집행 방해	170426	감봉1월	퇴직	*	퇴직
29	지방○○○	○○○	업무상 과실치사	170522	불문경고	51.5	우	미도래
30	지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70619	견책	54.5	우	미도래
31	지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70825	견책	39	양	미도래
32	지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70916	감봉2월	40.75	양	미도래
33	지방○○○	○○○	현장 응대 불친절	170920	불문경고	52	우	미도래
34	지방○○○	○○○	현장 응대 불친절	170920	불문경고	52.25	우	미도래
35	지방○○○	○○○	공연음란,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170928	강등	40	양	미도래
36	지방○○○	○○○	폭행	171018	불문경고	53.5	우	미도래
37	지방○○○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난폭운전)	171219	견책	43.75	양	미도래
38	지방○○○	○○○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보복운전)	171226	불문경고	48.75	우	미도래